

| 유형           | 가점대상                  | 부여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법정           | 취업지원 대상자<br>(보훈대상자)   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'의 가점 부여 기준에 따름. |
| 사회적<br>배려 대상 | 장애인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저소득가정<br>(기초생활수급자)    | ①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(생계, 주거, 교육, 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자) 또는 ②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(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) 이 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다문화가정                 |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또는 결혼이민자 등에 해당하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고졸자                   | 최종 졸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(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) 이하인 자<br>-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대학 중퇴자를 포함하나,<br>대학(전문대학) 재학·휴학자,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등은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북한이탈주민                |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자립준비청년<br>(보호종료아동)    | 「아동복지법」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회공헌         | 지역공부방 봉사자<br>(6개월 이상) | 1365 자원봉사포털' 및 'VMS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'에 등록 및 확인할 수 있는 지역공부방 프로그램에 6개월 이상 참여한 대학(원)생으로 1365 및 VMS에서 활동기간, 시간 및 횟수, 지역공부방 관련 활동 실적 인정서 및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